# 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사항 (제 9 편 추가설비)



-1 -11	
현 행	개 정 안
제 2 장 하역설비	제 2 장 하역설비
제 1 절 <생략>	제 1 절 <생략>
제 2 절 검사	제 2 절 검사
201. 〈생략〉 202. 하역설비의 검사  1. 검사의 종류 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(1) 등록검사  (가) 제조중등록검사  (나) <u>제조후등록검사</u>	201. 〈생략〉 202. 하역설비의 검사  1. 검사의 종류 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(1) 등록검사  (가) 제조중등록검사  (나) 제조중 이외의 등록검사  〈이하 생략〉
203. 등록검사  1. 도면 및 기타자료의 제출 【지침 참조】 (1) ~ (2) 〈생략〉 (3) 새로이 제작되는 하역설비에 대하여 (가)부터 (사)에 나열된 관련 도면 및 자료를 참고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(가) 하역장치 및 하역램프의 사양서 (나) (2)호에 규정된 승인용도면 및 자료에 관련된 계산서 또는 점검표 (다) 하역장치 및 하역램프 작동지침서 (라) 비파괴시험방안서 (마) 하중시험방안서 (비) 석면이 포함된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위치 및 기타 상세정토를 포함한 자료 (사)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 및 자료	면 및 자료를 참고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(가) 하역장치 및 하역램프의 사양서 (나) (2)호에 규정된 승인용도면 및 자료에 관련된 계산서 또는 점검표 (다) 하역장치 및 하역램프 작동지침서 (라) 비파괴시험방안서 (마) 하중시험방안서 (바)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 및 자료

현 행	개 정 안
(4) <u>하역설비의 제조후등록검사 시기에</u> 제출하여야 하는 도면 및 자료는 (2)호 및 (3)호에 규정된 바와 같다. 다만, 우리 선급이 승 인하는 경우, 이러한 도면 및 자료 중 일부에 대하여 관련된 과거 의 검사기록이나 증서를 제출받고 생략할 수 있다.	
   〈이하 생략〉	〈이하 현행과 동일〉
(1-1 6 1/	(1-1 26-1 62)

현 행	개 정
제 7 장 잠수설비	제 7 장 잠수설비
제 1 절 ~ 제 8 절 <생략>	제 1 절 ~ 제 8 절 <생략>
제 9 절 압축기	제 9 절 압축기
	901. 일반사항 1. ~ 2. 〈생략〉 3. 압축기에 대한 성능시험은 607. 및 BS EN 12021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.

#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사항 (제 9 편 추가설비)



# 현 행 개 정

# 제 2 장 하역설비

## 제 1 절 일반사항

101. ~ 102. 〈생략〉

103. 배치. 구조. 재료 및 용접

- 1. 〈생략〉
- 2. 재료
- (1) ~ (5) 〈생략〉

### 표 9.2.1 저온에 노출된 강재의 종류

설계온도 $T$	재료두께 <i>t</i> (mm)				
(℃)	$t \le 10$	$10 < t \le 20$	$20 < t \leq 25$	$25 < t \le 40$	40 < t
$-10 \le T$	A/AH		B/AH	D/DH	E/EH
$-20 \le T < -10$	B/AH D/DH		E/EH		
$-30 \le T < -20$	E/EH			<u>RL24A</u>	<u>RL24B</u>
$-40 \le T < -30$	<u>RL24A</u>		<u>RL24B</u>		*
$-50 \le T < -40$	<u>RL24B</u>		*		
(비고)					
〈생략〉					

〈이하 생략〉

# 제 2 장 하역설비

## 제 1 절 일반사항

101. ~ 102. 〈현행과 동일〉

103. 배치, 구조, 재료 및 용접

- 1. 〈현행과 동일〉
- 2. 재료
- (1) ~ (5) 〈현행과 동일〉

### 표 9.2.1 저온에 노출된 강재의 종류 (2019)

설계온도 $T$			재료두께 <i>t</i> (mm)		
(℃)	$t \le 10$	$10 < t \le 20$	$20 < t \le 25$	$25 < t \le 40$	40 < t
$-10 \le T$	A/AH		B/AH	D/DH	E/EH
$-20 \le T < -10$	B/AH	D/DH	E/EH		
$-30 \le T < -20$	E/EH			<u>RL235A</u>	<u>RL235B</u>
$-40 \le T < -30$	<u>RL235A</u>		<u>RL235B</u>		*
$-50 \le T < -40$	<u>RL235B</u>		*		
(비고)					
〈현행과 동일〉					

〈이하 현행과 동일〉

현 행	개 정
제 9 장 화물증기 배출제어장치	제 9 장 화물증기 배출제어장치
제 3 절 VEC2 부호 요건	제 3 절 VEC2 부호 요건
302. 넘침경보장치 1. 〈신설〉 1. 규칙 302.의 1항 (5)호에서 화물갑판지역에서 작업자가 인지할수 있는 장소에 가시가청의 경보를 설치하여야 한다. ↓	302. 넘침경보장치  1. 규칙 302. 1항 (1)호와 (3)호를 적용함에 있어 액면계측장치와 고액면 경보장치의 센서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.  2. 규칙 302.의 1항 (5)호에서 화물갑판지역에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가시가청의 경보를 설치하여야 한다. ↓